고 시

◉지식경제부고시제2013-47호

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천항자유무역지역을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13년 2월 28일

지식경제부장관

인천항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

① 명칭 : 인천항자유무역지역

② 위치 :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인천항 내항, 4부두 배후지, 남항 ICT「컨」부두 내

③ 경계 : 인천항 내항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, 4부두 배후지 M&M 통운(주) 부지의 외곽 울타리 경계(변경지역), 남항 ICT「컨」부두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 경계

④ 면적 : 2,014,004.6㎡ (당초 : 2,405,118㎡)

⑤ 토지이용계획(변경지역) : 물류시설지구 기능 및 시설물 배치

⑥ 관리권자 : 국토해양부장관

⑦ 관계도서 :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(해양항공정책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

⑧ 위치도



⑨ 변경내역

변경 전	변경 후
○ 인천항 내항 : 1,700,230㎡ ○ 4부두 배후지 : 467,000㎡ ○ 남항 ICT「컨」부두 : 237,888㎡	○ 인천항 내항 : 1,700,230㎡ ○ 4부두 배후지 : 75,886.6㎡ (감 391,113.4㎡) ○ 남항 ICT「컨」부두 : 237,888㎡
○ 총면적 : 2,405,118㎡	○ 총면적 : 2,014,004.6㎡ (감 391,113.4㎡)